
'19년 세계음부즈만협회 (IOI) 이사회 참석 결과보고서

2019. 5. 13(월) ~ 5.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주요성과	2
III. 시사점 및 향후계획	3
IV. 세계음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결과	4
V. 주 멕시코 한인 권익보호 위한 멕시코 음부즈민과 협력 등	20

I 출장개요

□ 출장자 및 출장일정

- 출장기간 : '19. 5. 13(월) ~ '19. 5. 19(일), 4박 7일
- 출 장 지 : 멕시코 메리다
- 출 장 자 : 위원장,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 김미란 사무관,
한효정 에디터

□ 출장목적

- 멕시코 옴부즈만 양자 협력회의 [5.14(화), 메리다]
 - 주 멕시코 재외교민 및 재외동포 권익보호 협력 방안 등 논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5.14(화)-16(목), 메리다]
 - IOI 신규가입 회원 자격 심사·승인, IOI 규정개정 논의, IOI 재정 집행 승인 등

□ 세부일정

일 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5.13(월)	인천	멕시코	· 인천(12:25) → 메리다(16:30)
5.14(화)	메리다		· 멕시코 옴부즈만 양자 협력회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환영 리셉션
5.15(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회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I
5.16(목)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II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III
5.17(금)	멕시코	인천	· 메리다(14:00) → 인천(06:00+2일) ※ 시차 및 비행시간으로 귀국일은 5.19(일)

□ 국제 옴부즈만 발전 협력을 위한 주도적 논의 참여

- 옴부즈만 개념의 올바른 확산 및 세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 주도적 참여
 - 옴부즈만에 대한 베니스 원칙, 유럽평의회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 옴부즈만 국제 결의 제정의 합리적 방향 유도 및 확산 도모
 - ※ 위기에 빠진 옴부즈만(정치적 이유 등으로 권한 약화 시도 등)을 위한 공동 규탄, 옴부즈만의 발전적 변화 도모를 위한 도구로 사용
- 규정개정 소위원회 멤버로서 IOI 규정 개정 논의 주체적 참여
 - 집행부 구성의 형평성, 지역대표 구성의 공정성, IOI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 주 멕시코 한인 권익보호 위한 멕시코 옴부즈만과 협력 논의

- 멕시코 옴부즈만에게 주 멕시코 한인 사회의 중요성 환기
 - 에네켄 한인 이주 후 5세대까지 이어지는 한인 이민사, 메리다 시의 5월 4일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등 소개
- 주 멕시코 재외교민·동포 권익보호 협력방안 합의
 - 멕시코 옴부즈만과 권익위간의 협력 내용과 권익위 심볼을 넣어 멕시코 옴부즈만 고충 제도 소개 팜플렛 제작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멕시코 옴부즈만 팜플렛을 한국 교민에 배포
 - 한인 교민 권익 침해 시 한국 대사관 - 권익위 - 멕시코 옴부즈만 협력하여 해결 추진

□ '20년 총회 선거 대비 아시아 지역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총회 이전 지역이사·집행부 선거* 및 증가된 아시아 지역이사 수 (3명→4명) 감안, 아시아 지역 역할 극대화 방안 협력국과 모색 필요
 - 아시아 내 선진 옴부즈만 제도 운영 중인 기관 대표를 지역이사로 선출토록 현 IOI 재무 및 지역이사인 태국 측과 긴밀히 협의
 - ※ '17년 이뤄진 선거규정 개정으로 '20년 IOI 총회부터 사전 전자투표로 지역이사 등 선출 이뤄짐('19. 10. 1.부터 선거 절차 시작)
 - ※ 아시아 내에 많은 이슬람권 국가 옴부즈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선진국인 일본의 '행정 평가국' 등을 지역이사로서 선출 검토

□ 국제회의 등 참석 시 현지 교민 권익보호 방안 전략적 마련 필요

- 금번 메리다 이사회 주최측인 멕시코 옴부즈만과 주 멕시코 한인 권익보호 협력 합의를 이룬 것을 계기로,
 - 향후 IOI, AOA 등 국제 옴부즈만 회의 참석 시 현지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활동방안 마련 필요
 - 이와 함께 현지 교민들 한인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는 활동 병행(ex. 금번 메리다 한인 이민자 박물관 한복 기증 등)

IV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14(수)~15(목)
- 장 소 : 멕시코 메리다(메리다 하얏트 리젠시)
- 참 석 : IOI 지역이사 20명 중 14명 참석
- 지역이사 참석현황

지 역	이 름	국 가	비 고	참석여부
아프리카	Caroline Sokoni(Ms)	잠비아	지역회장	○
	Martha CHIZUMA MWANGONDE(Ms)	말라위		○
	Alioune Badara CISSÉ(Mr)	세네갈		X
아시아	(RP)Asad Ashraf MALIK(Mr)	파키스탄	지역회장	X
	Un-Jong Pak(Ms)	대한민국		○
	Viddhavat Rajatanun(Mr)	태국	재무이사	○
호주 ·태평양	(RP)Peter BOSHIER(Mr)	뉴질랜드	지역회장	○
	Chris FIELD(Mr)	西호주	제2부회장	X
	Deborah GLASS(Ms)	호주(빅토리아)		○
카리브 ·남미	(RP)Victoria PEARMAN(Ms)	버뮤다	지역회장	○
	Luis Raul GONZALEZ PEREZ(Mr)	멕시코		○
	Raúl LAMBERTO(Mr)	아르헨티나		○
유럽	(RP)Rafael RIBÓ(Mr)	스페인	지역회장	X
	Nick BENNETT(Mr)	영국		○
	Peter TYNDALL(Mr)	아일랜드	회장	○
	Ülle MADISE(Ms)	에스토니아		X
	Catherine DE BRUECKER(Ms)	벨기에		○
북미	(RP)Paul DUBE	캐나다	지역회장	○
	Marianne RYAN(Ms)	캐나다		X
	Diane Welborn(Ms)	미국	제1부회장	○

□ **의제별 논의내용**

▷ **[의제 1) 회의 개최**

- '18년 온타리오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언어(영어) 승인

▷ **[의제 2) 보 고**

- IOI 회장과 사무총장의 1년간 IOI 활동 내역 보고 및 승인

※ 사무총장의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으로서의 임기가 2019. 6. 30.부로 종료.
이후 IOI의 외부 컨설턴트로 임명 승인

▷ **[의제 3) 회원 가입 및 평가**

① 정회원 신청 건(11)

지 역	기 관	사무총장 검토의견	집행부·이사회 검토의견
아프리카	모잠비크 옴부즈만(모잠비크)	추천	추천
	보건 옴부즈만(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사회 논의 필요	준회원 자격 부여
	요하네스버그 옴부즈만(남아프리카 공화국)	추천	추천
아시아	부천시 시민 옴부즈만(대한민국)	이사회 논의 필요	준회원 자격 부여
카리브·남미	연방특별구 인권 위원회(멕시코)	추천	추천
	킨타나 루 인권 위원회(멕시코)	추천	추천

유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옴부즈만	추천	추천
	오스피탈레트 그레헤스 심사소(스페인, 카탈루냐)	추천	추천
	고령자 위원회(북아일랜드)	이사회 논의 필요	준회원 자격 부여
북미	라발 도시 옴부즈만(캐나다)	추천	추천
	하와이 옴부즈만(미국)	추천	추천

○ 보전 옴부즈만(남아프리카 공화국)

- 독립성과 의회에 대한 책임성 부족으로 아프리카 지역회장, 집행부, 이사회 다수 의견으로 정회원 가입을 반려,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 자격 부여 승인

○ 부천시 시민 옴부즈만(대한민국)

- 조례 상 옴부즈만 해촉 조항*에 시장이 옴부즈만 해임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기가 짧은 점(2년)을 이유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집행부, 이사회 다수 의견
- 정회원 가입 반려,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 자격 부여 승인

○ 고령자 위원회(북 아일랜드)

- 입법기관에 대한 책임성 부족으로 아프리카 지역회장, 집행부, 이사회 다수 의견으로 정회원 가입을 반려,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 자격 부여 승인

② 준회원 신청 건(1)

지 역	개 인	사무총장 검토의견	집행부·이사회 검토의견
유럽	Ms. Angelica Zanninelli	추천	준회원으로 부여

- 준회원 자격 부여 승인

③ IOI 회원 평가

- 최종 평가 보고서의 '20년 총회 제출을 위해 현재 3차 회원 평가 진행 안내 및 회원 평가를 위한 템플릿 개발 건에 대해 승인
 - 조직·거버넌스, 관할권·권한, 음부즈만의 직책, 독립성 부분 등의 항목에 대한 규정 준수 정도에 따라 교통 신호등 방식 (어두운 녹색=완전 준수, 연한 녹색=대체로 준수, 주황색=부분 준수, 적색=미준수)의 평가 템플릿 마련 및 사용 승인
- 평가 결과 '규정 미준수'의 평가를 받은 기관의 대표가 지역 이사나 집행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벨기에 음부즈만에 의해 제기되었고, 회원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더블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의제 4) 재무보고

①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예산개요

- 이사회 승인

② 2017/2018 재정감사 보고

- 이사회 승인

③ 2019/2020 외부감사

- 이사회 승인

④ 회비 감면 요청

- 우크라이나 옴부즈만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회비 감면 (375EUR→250EUR)을 요청한 안전에 대해

- 새로운 회비구조 하에서 우크라이나는 375EUR의 회비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회비 감면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

※ 우크라이나는 '14-'15년 회비는 면제, '16-'17년 회비는 감액, '18년부터는 375 EUR 납부해야 함

⑤ 회비구조 개편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자체평가 결과 회비 등급 현황(2019. 4. 23.기준)

등급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전체
1 (1,500유로)	0	2	7	5	19	2	35
2 (750유로)	21	16	7	14	44	8	110
3 (375유로)	7	4	4	7	21	3	46

※ IOI 사무국에서 회원들의 회비 지불 능력에 따라 회비 구조를 단계화 하는 회비구조 개편안이 제시되어 '18년부터 시행

- 기존 전 회원기관 750유로(약 100만원)에서, 기관별 1년 예산 규모 기준 3개 등급으로 나누어 회비 지급

▷ **[의제 5] 지역 보조금**

- 2019-2020 지역보조금 규모(42,000유로, 약 5,340만원) 승인
 - 제12차 IOI 총회(2020년 5월) 등록비 및/또는 출장 경비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IOI 회원의 총회 참석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 예정

▷ **[의제 6] IOI 규정개정**

- 규정개정소위원회*의 규정개정 작업 과정 및 목적에 대한 크리스 필드(Mr. Chris Field) 동 위원회 의장의 보고
 - ※ 크리스필드 (Mr. Chris Field) IOI 제2부회장이 의장으로, 박은정 위원장이 위원으로 속해 있음(그 외 미국 데이턴, 영국 웨일스, 멕시코, 잠비아, 뉴질랜드 옴부즈만 총 7개국으로 구성)
- 다음과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논의 및 '20년 더블린 총회 상정 승인

개정 1 : 의결정족수 완화

- 의결 정족수를 투표권 보유회원 총수의 과반에서 40%로 개정 (제14조제3항)
 - ※ 주요 개정 목적 : IOI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모(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2016년 방콕 총회 계기)
 - ※ 조문대조표

기존안	개정안
총회의 정족수는 투표권 보유 회원 총수의 과반수 로 한다.(제14조3항)	총회의 정족수는 투표권 보유 회원 총수의 사십 퍼센트(40%) 로 한다.

개정 2 : 지역이사 수 요건 완화

- 한 지역에서 IOI 이사 4명을 선출할 수 있는 IOI 투표권 보유 회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춤(제11조제1항)

※ 주요 개정 목적 : 지역 인구 수가 많으나 투표권 보유 회원기관 수가 적은 IOI 지역(특히, 아시아)을 고려해 투표권 보유회원의 이사 선출 자격 요건을 완화, 지역별 균형을 도모

※ 동 조항 개정되면 아시아 지역이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예상

※ 조문대조표

기존안	개정안
<p>각 지역에서 선출된 그 밖의 이사들, IOI 선출직 임원을 포함한 각 지역 이사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최대 4명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60명 이상인 경우 최대 5명 <p>(제11조제1항d호)</p>	<p>-----</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최대 4명 · 투표권 보유 회원 수가 60명 이상인 경우 최대 5명

3 : 모든 지역 대표 집행위원회 구성

- 집행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회장은 자동적으로 집행위원회에 구성됨(제13조제1항)

※ 주요 개정 목적 : 집행위원회 구성에 있어 IOI 6개 지역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부여

※ 조문대조표

기존안	개정안
<p>집행위원회는 회장, 제1 부회장, 제 2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들, 사무총장, 재무이사는 IOI 를 대표한다.(제13조 본문)</p>	<p>집행위원회는 회장, 제1 부회장, 제 2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그리고 회장, 제1 부회장, 제 2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로 집행위에 참석하지 않는 지역의 회장 (Article 22 (3)(b)언급된 바와 같이)으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들, 사무총장, 재무이사, 혹은 집행부의 지역 회장(들)은 IOI 를 대표한다.</p>

개정 4 : 투표권 대리 통지 요건 완화

- 투표권 대리 행사할 직원 신상에 대한 사무국 통지 기간을 총회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개정(제14조제4항)

- ※ 개정 목적 : 투표 참여수 증대로 IO 포용성 원칙 제고
- ※ 조문대조표

기존안	개정안
회비를 완납한 투표권 보유 회원 기관의 현직 ombudsman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권 보유 회원기관의 현직 ombudsman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투표권을 대리 행사할 직원의 신상을 최소 2주 전에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제14조4항)	----- ----- ----- ----- 1주 전에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 **[의제 7] IO 프로젝트**

① **ombudsman에 대한 베니스 원칙 제정 보고**

- 베니스 위원회*의 118차 정기총회(2019. 3. 15-16, 베니스)에서 ‘ombudsman 기관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총 25개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고

-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평의회 산하 위원회로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임. 1990년 창립 당시 18개 회원국에서, 유럽 평의회 회원국 47개 전부가 가입됨
- * IO는 베니스 원칙 마련 작업에 협력해 옴

ombudsman에 대한 베니스 원칙

1. ombudsman 기관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선정,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평의회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표준화된 모델은 없으나, 동 국가들은 ombudsman 기관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2. ombudsman 기관은 동 기관의 권한을 포함하여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기관의 특징 및 기능은 상세 법령에 명시될 수 있다.
3. ombudsman 기관은 적절한 높은 위치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는 ombudsman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4. 국가 조직, 그 특수성 및 필요에 따라 단일 혹은 복수의 옴부즈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옴부즈만 기관은 각기 다른 지위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5. 국가는 동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옴부즈만 기관을 강화하고 국가 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한층 더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6.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기관의 권한, 공정성, 독립성 및 정통성이 최대한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야 한다.

옴부즈만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다수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후보자 선정 절차에는 반드시 공개 판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며,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객관적이며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8. 옴부즈만 임명 기준은 광범위하여 다양한 후보자를 장려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청렴성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적절한 전문성 및 경력은 필수적인 기준이다.

9. 옴부즈만은 직무 기간 중 옴부즈만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또는 직업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옴부즈만과 그 직원은 자율적인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0. 옴부즈만의 임기는 임명 기관의 임기보다 길어야 한다. 임기는 재임이 불가능한 단임제가 바람직하며, 연임이 허용되는 경우 옴부즈만의 임기는 단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단임 기간은 7년 미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옴부즈만은 법으로 규정된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서만 해임될 수 있다. 해임 사유는 전적으로 “무능” 또는 “직무 수행 능력 상실”, “위법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해당 사유는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도록 한다. 해임을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의회에서 직접 진행되거나 의회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진행) 이상이 필요하며, 선출을 위해 필요한 요건보다 동일하거나 보다 높아야 한다 (높은 것이 바람직함). 해임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2. 옴부즈만의 권한으로 실정(失政)을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옴부즈만 기관의 권한으로 모든 단위의 행정 업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옴부즈만의 권한으로 주정부, 지방자치 단체, 국가기구 또는 민간 단체에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이익 및 공공 서비스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옴부즈만의 사법 권한은 절차상의 효율성 및 특정 제도의 행정 기능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14. 옴부즈만은 당국의 지시사항을 받거나 따르서는 안 된다.

15. NGO를 포함한 개인 또는 법인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무료로 옴부즈만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6. 옴부즈만은 본인의 주도 하에 또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능한 행정 시정 조치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옴부즈만은 조사를 도울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옴부즈만은 법적 기밀로 취급되는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문서,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자유를 박탈 당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 건물, 및 기관에 대하여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가 포함된다.

옴부즈만은 공무원 및 당국에 서면 설명을 요구하거나 면담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 부문의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17. 옴부즈만은 기관의 권한 내에서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무원 및 당국이 회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18.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하여 비준된 국제 문서가 국가 단위에서 적절히 이행되는지, 그리고 동 문서와 국내법이 적절히 조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옴부즈만은 입법 또는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여 권고사항을 의회 또는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19. 옴부즈만은 조사가 끝난 후 법규 또는 일반 행정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옴부즈만은 적절한 판결 기구 및 법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옴부즈만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법률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이 중지될 수 있다.

20. 옴부즈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기관의 활동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옴부즈만은 행정부의 규정 불이행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만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한 문제를 보고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당국에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행정부에서 임명한 옴부즈만이 제출한 보고서에도 적용된다.

21. 옴부즈만 기관은 독립적인 예산 자원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옴부즈만 기관이 기관의 책무 및 기능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차기 회계 연도에 대한 예산 초안을 협의하고 제출해야 한다. 예산 축소가 모든 국가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채택된 기관 예산안은 회계 연도 중 축소될 수 없다. 옴부즈만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에서는 기관의 권한 행사 우선순위가 아닌, 공식적인 재무 기록의 합법성만 고려하도록 한다.

22. 옴부즈만 기관은 충분한 직원과 적절한 구조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옴부즈만은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그의 직원을 모집할 수 있다.

23. 옴부즈만, 그의 대리인 및 의사결정 직원은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 표명하는 말 또는 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책권을 갖는다. (기능적 면책) 이와 같은 기능적 면책권은 옴부즈만, 그의 대리인 및 의사결정 직원이 기관을 떠난 후에도 적용된다.

24. 각 국가는 옴부즈만 기관의 억압 또는 기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 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

25. 동 원칙은 옴부즈만 기관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읽고, 해석하고, 사용해야 한다. 옴부즈만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유형, 제도 및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각국은 베니스 원칙에 따라 옴부즈만 기관 및 기관의 역량, 독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헌법 및 입법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유럽평의회 옴부즈만 권고사항(RECOMMENDATION NO. R(85) 13) 개정 협력 보고

-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권고사항 (RECOMMENDATION NO. R(85) 13)(1985년 채택)에 독립성 또는 의회와의 관계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더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IOI가 협력하고, 동 권고사항에 첨부할 모범사례 편찬을 IOI가 담당 예정

권고사항 R(85) 13 주요 내용

- a. 국가, 지역 또는 지방 단위에서, 혹은 공공 행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옴부즈만을 임명할 것을 고려한다.
- b. 옴부즈만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 옴부즈만이 일반적인 권한을 통하여 인권 문제를 정밀 조사하고 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고려한다. 이것이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곳에 조사를 시작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c. 행정 기능 수행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옴부즈만의 권한을 확대 및 강화할 것을 고려한다.

- 이사회 승인

▷ [의제 8] UN Working Group

① UN Working Group 진행상황 보고

- UN 기구 내에서 옴부즈만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 인지, 옴부즈만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UN Working Group을 IOI 내에 설립. 동 그룹은 2019년 1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해 UN 기구에 대한 접근 방법을 기획하는 업무수행 협의
- 이사회 승인

② 옴부즈만에 관한 UN 결의(UN Res 72/186) 개정 작업

- 2017. 12. 19. UN 총회에서 채택된 ‘The role of the Ombudsman, mediator and othe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 Res 72/186) 결의문을 더욱 명확하고 지시적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만한 결의문으로 개정 작업 예정
- 이사회 승인

③ 영구 미션(Permanent Missions) 대표부와의 연계

- UN Permanent Representatives(UN 대사들)에게 옴부즈만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소개 활동 추진
- 이사회 승인

④ GANHRI와의 MOU 업데이트

-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과 2015년 3월에 체결된 MOU에는 GANHRI의 이전 이름인 ICC 로 되어 있는 등 MOU의 개정이 필요

* 각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 시스템 간에 연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3년 파리원칙의 준수 여부를 토대로 UN 내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참석권 및 발언권을 얻는 지위인 'A Status'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짐

- 파리 원칙을 통한 GANHRI의 UN 내 역할과 같이 UN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옴부즈만 원칙 개발하는 데에 동 MOU를 통해 도움 얻음
- 이사회 승인

⑤ AOA와의 MOU/중국과의 대화 보고

- IOI 회장과 사무총장은 2018년 12월경 대만 옴부즈만 (Control Yuan) 대표를 만나, IOI 홈페이지의 대만 옴부즈만의 국가 표기 중 'Republic of China(중화민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음(현재 'Taiwan'으로 명기)
- 태국 옴부즈만은 2019. 4. 2. AOA 내 중국 옴부즈만 기관 (The 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 측과 대화한 결과 대만 옴부즈만 국가명이 'Taiwan, China'가 아닌 한 IOI 와 AOA간의 MOU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음

○ 피터 틴달(Peter Tyndall) 회장은 중국이 기존에는 대만 기관 국가 명을 'Taiwan', 또는 'Taiwan, China'가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대만 옴부즈만이 'Taiwan'으로 바꾼 이후에는 'Taiwan, China'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등, 현 AOA와의 MOU 상황은 교착 상태라고 언급

○ 태국 옴부즈만 새로운 대안 제시

- 중국이 속한 AOA와 MOU를 맺으려는 것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는 데에 중국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 태국 옴부즈만은 AOA와의 MOU가 계속적으로 좌절되는 것에 대한 타개책으로 UN 총회의 영구 옵저버(Permanent Obsever)* 지위 얻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

※ ECOSOC에 NGO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얻는 지위를 말함(동 지위는 ECOSOC 및 산하단체의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홍보 기회 얻음), IO는 동 지위를 과거 신청한바 있으나, UN 내 중국의 압박(IOI 대만 회원 명칭 문제)으로 실패, 중국이 속한 AOA와 MOU를 맺으려는 것은 위 ECOSOC 협의지위 획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임

※ 영구 옵저버(Permanent Obsever) : 유엔 가입국이 아닌 국가 또는 단체로서 UN 총회 참석 및 회의관련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현재 약 140개의 지역 및 국제기구가 영구 옵저버로서 가입되어 있음

- 동 방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논의 진행하기로 함

▷ [의제 9] 제12차 IOI 세계 컨퍼런스(더블린 총회)

① 진행상황 보고

- 아일랜드 옴부즈만 사무국 직원 브리핑
 - 컨퍼런스 주제 : '음성 없는 자에게 주는 음성(Voice to the voiceless)'

② 더블린 총회 이전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선거 진행 안내

선거 절차

지역이사 지명기간('19. 10. 1.- 10. 28.) → 지역이사 선거('19. 11. 14.까지 14일간 투표)
→ 임원 지명기간('19. 11. 21.- 12. 5.) → 임원선거(회장 : 2019. 12. 27.까지, 부회
장단 : 2020. 2. 12.까지, 재무이사 : 2020. 3. 30.까지 각각 14일간의 투표로 선출)

※ 지역회장은 더블린 총회 후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음

※ 2020. 5. 17. 더블린 총회 이전, 최초로 전자투표를 통한 이사회 및 임원 선거 실시

▷ [의제 10] 교육/트레이닝

① 2018/2019 트레이닝 보고

- 이사회 승인

② 옴부즈만의 Media 대응 훈련

- 2020년 가을에 비엔나에서 개최될 IOI 사무국 미디어 교육
예산으로 최대 20,000 유로를 책정할 것
- 이사회 승인

③ Best Practice Papers

- 2020년부터는 유럽지역 이외의 지역(특히 아프리카)에 대해
초점을 두고 NPM 훈련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IOI에서
15,000유로 지원 예정

○ 이사회 승인

※ NPM(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 UN 고문방지협약 체결·비준시 설립해야하는 독립적 국가기관. 무제한적으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구금시설 내 부당대우를 조사할 수 있음.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임

▷ [의제 11] 출판

○ 빅토르 아예 니(Victor Ayeni)를 ‘아프리카 지역 비교 연구’의 저자(주제 : 아프리카 옴부즈맨 제도 - 설계, 운영 및 성과)로 결정하고('19. 1. 4), 초안을 '19. 9. 30.까지 제출예정

○ 이사회 승인

▷ [의제 12] 기타 의제

① 지역활동 보고

○ 박은정 위원장은 지역별로 보고 형식,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통일된 보고의 필요성 언급, 이사회에서 향후 통일된 보고 형식 추진토록 함



<'19년 메리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 이사회>

□ 배경

- 금번 IOI 이사회를 멕시코 ombudsman이 주최한 것을 계기로, 주 멕시코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환기 및 한인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모색 필요
 - 현지 교민 및 재외동포 한인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는 활동 병행

□ 권익위-멕시코 ombudsman 협력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5. 14.(화) 10:00-11:00, 하얏트 리젠시 메리다 호텔
- 멕시코 ombudsman(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Mexico) 개요
 - 위원장 : 루이스 라울 곤잘레스 페레즈(Luis Raúl González PÉREZ)
 - ※ 경력 :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 법률 전공, 검사, 인권변호사, 법무부 장관
 - 주요 권한
 -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행정의 조사 및 권고
 - 조직 규모
 - 전국 15개 지방 사무소 보유(메리다 사무소 운영)

○ 협력회의 내용

- 멕시코 옴부즈만에게 주 멕시코 한인 사회의 중요성 환기
 - 에네켄 한인 이주 후 5세대까지 이어지는 한인 이민사, 메리다 시의 5월 4일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등 소개
- 주 멕시코 재외교민-재외동포 고충 전달
 - ※ 메리다 한인회측 의견
 - 부패 문제 : 멕시코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거 공약으로 부패척결을 말했지만, 관공서, 경찰, 세무서 등 대부분 국가 기관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치안 불안 : 마약 판매 조직들이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움(전쟁)을 하기 때문에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
- 주 멕시코 재외교민·동포 권익보호 협력방안 합의
 - 멕시코 옴부즈만 고충처리 소개 팜플렛에 멕시코 옴부즈만과 권익위 간의 협력 내용과 권익위 심볼을 넣어 제작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멕시코 옴부즈만 팜플렛 한국 교민 배포
 - 한인 교민 권익 침해 시 한국 대사관 - 권익위 - 멕시코 옴부즈만 협력하여 해결 추진

□ **한인 이민자 박물관 방문 및 시착용 한복 기증**

- 항일·민족* 정신이 서린 메리다 한인 이민자 박물관 방문 및 한인 후손 시착용 한복을 박물관에 기증
- 한인 자긍심 고취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노력 동참 일환
 - ※ 114년 전 에네켄 한인 이주 자료 및 에네켄 한인들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항일투쟁 자료 등 박물관



<권익위-멕시코 옴부즈만 양자 협력회의>



<메리다 한인 이민자 박물관 방문 및 한복 기증>